

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2. 1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1월 17일,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8년 1월 1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17회 임시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(2018년 2월 1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유상한

가. 제안이유

어린이놀이시설 행위의 제한 사항 중 애완동물의 출입을 일체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의 입장까지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4조(행위의 제한) 제1호 흡연, 음주, 가무, 방뇨행위 및 애완동물 동반 출입행위 사항에 장애인 보조건 예외사항을 추가
 - 애완동물에 ‘장애인 보조건을 제외’ 명시
-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유준상)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어린이놀이시설 행위의 제한 사항 중 애완동물의 출입을 일체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의 입장까지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함에 따라,

○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‘장애인 보조건을 제외’ 내용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이는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에 근거하여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,

○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위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